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사례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반응병 사무관
2004/5/8

1. 서론

최근 일본의 나카무라 슈지의 특허대가 2,200억원 승소기사가 보도되면서 직무발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업과 기술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연구개발한 당사자 발명자의 위치는 미미한 존재였다.

수조원의 가치를 가진 특허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카무라 슈지에게 회사가 내린 포상은 과장 승진과 특별 수당 200,000원이었으며, 미국으로의 이민 후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소송을 제기한 그는 올해 무려 2,200억원의 보상금을 받으며 승소했다. 나카무라 슈지가 발명한 청색 LED는 모니터, 옥외 전광판, 휴대폰 백라이트, 교통신호등, 차세대 DVD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특히 현재 세계 휴대폰 중 90%에는 바로 나카무라 슈지가 발명한 청색LED가 활용 된다. 나카무라가 근무했던 기업은 당시 조그만 중소기업체에 불과했던 니치아화학이었으나, 단숨에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발돋움했다. 이후 슈지는 2000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대학교수로 떠났고, 2001년 8월 니치아화학을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청색 LED 특허권리 반환과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결국, 발명자에 대한 권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나아가 직무발명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강화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직무발명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기사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현재의 법제도를 관련시키고자 한다.

저작권 문제로 기사 삭제하였습니다.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http://www.cheric.org>)

3. 결론

창의적인 산출물인 발명에 대한 댓가는 충분히 보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그동안의 제도적인 보호환경이 미약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법적으로는 어느정도 제도화되어가고 있고 보상기준도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보상(혜택)을 충분히 받은 사례가 없다. 이는 정부, 개인, 기업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국가간에서는 국제적인 경쟁을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원천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과 기업간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주장하는 자만이 자기의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법적제도가 하루빨리 보완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나의 직무발명이고 그래서 이에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꼭 소송으로 주장하여야만 하는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책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 참고문헌 - 특허청 홈페이지

- (1) 직무발명관련 규정
- (2) 국공립대학교수의 발명 및 퇴직후의 발명
- (3) 특정대학의 직무발명규정 예